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154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이주영・이준석・천하람

김예지 · 김용태 · 유용원

최수진 • 윤상현 • 윤재옥

손명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 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.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,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,130건에서 2024년 12,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.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다양해지고 있으며,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, 인적속성,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 상 "관계 등의 우위 규정"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, 인적 속성,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

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). 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계 등의 우위는 수적 측면, 인적 속성,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	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
지)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	ス])
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	
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	
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	
신체적 ·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	
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	
(이하 "직장 내 괴롭힘"이라 한	
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
<후단 신설>	경우 관계 등의 우위는 수적
	측면, 인적 속성, 직장 내 영향
	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
	<u>판단하여야 한다.</u>